



통보

부록

다음의 2024년 10월 17일자 통보문은 미국 대표의 요청으로 회람한다.

제목: 수소불화탄소의 단계적 축소: 2020년 미국혁신제조법에 따른 특정 수소불화탄소 및 대체물 관리

부록 사유:	
<input type="checkbox"/>	의견 마감일 변경 - 날짜:
<input type="checkbox"/>	통보 조치의 채택 - 날짜: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통보 조치의 공표 - 날짜: 2024-10-11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통보 조치의 시행 - 날짜: 2024-12-10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최종 조치 전문 확인 출처: <a href="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4/TBT/USA/final_measure/24_06920_00_e.pdf">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4/TBT/USA/final_measure/24_06920_00_e.pdf</a>
<input type="checkbox"/>	통보 조치의 철회 또는 취소 - 날짜: 조치가 재통보된 경우 관련 통보문 기호:
<input type="checkbox"/>	변경된 통보 조치의 내용 또는 범위 및 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출처 <sup>1</sup> : 새로운 의견 수렴 마감일(해당될 경우):
<input type="checkbox"/>	발행된 해석 지침 및 전문 조회 <sup>1</sup> :
<input type="checkbox"/>	기타:

내용: EPA(미국 환경보호청)은 2020년 미국혁신제조법의 특정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한다. 이 규칙 제정은 수소불화탄소 관리에 있어서 배출 감소 및 회수 프로그램을 설정한다. 여기에는 수소불화탄소 및 특정 대체 물질이 포함된 냉매를 사용하는 특정 장비에 대한 누출 수리와 자동 누출 감지 시스템의 설치·사용 요구 사항, 재생 수소불화탄소로 수행되는 특정 냉매 함유 장비의 서비스 및/또는 수리, 재활용 수소불화탄소를 사용한 소화 설비의 초기 설치 및/또는 유지보수 및 수리, 기술자 교육, 수소불화탄소가 포함된 소화 설비의 폐기 전 재활용, 폐기 전 일회용 실린더에서 수소불화탄소 제거, 특정 기록 유지·보고·라벨링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. 환경보호청은 또한 재사용을 위해 특정 인화성 소모 냉매를 재활용하기 위한 대체 자원보존복구법 표준을 제정한다.

이 규칙은 2024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.

미국연방관보(FR) 89호 82682, 미국연방규정집(CFR) 제40권 제84, 261, 262, 266, 270, 271부:

<https://www.govinfo.gov/content/pkg/FR-2024-10-11/html/2024-21967.htm>

<sup>1</sup> 최종 조치 및/또는 관련 지침 문서의 전문을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, PDF 첨부파일,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.

<https://www.govinfo.gov/content/pkg/FR-2024-10-11/pdf/2024-21967.pdf>

본 최종 규칙 및 [G/TBT/N/USA/2059](#)로 통지된 규칙 제정안 통지는 도켓 번호 EPA-HQ-OAR-2022-0606으로 식별된다. 도켓 폴더는 Regulations.gov(<https://www.regulations.gov/docket/EPA-HQ-OAR-2022-0606/document>)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, 주요 문서, 지원 문서 및 수렴 의견에 액세스할 수 있다. 또한, [Regulations.gov](#)에서 도켓 번호를 검색하여 문서를 조회할 수 있다.

---